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3. 6.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 안 제18조제3항제2호 “구미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미시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 면동·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 면동, 구미시의회사무국----- -----.
2. ~ 9. (생략)	2. ~ 9. (원안과 같음)
제18조(구성) ①·② (생략)	제18조(구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은 여성 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1. (생략)	1. (원안과 같음)
2. <u>구미시의회 의원</u>	<삭 제>
3. (생략)	2. (원안 제3호와 같음)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제3항제2호 및 제3호</u> 에 해당하 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 ----- <u>제3항제2호</u> ----- ----- -----.
⑤ (생략)	⑤ (원안과 같음)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구미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건·휴양·안전·후생·공동체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구미시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구미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
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
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
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
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
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
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부

여함에 있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구미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월할(月割)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月割)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⑤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계산 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추가 등 증감사유가 발

생하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후생복지사업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실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7.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나. 명예퇴직 예정자

9.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0.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
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4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과 제1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공무
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